

HD현대일렉트릭(주)

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2023. 5.

목차

1. 개요	2
2. 인권 및 노동	4
3. 안전 및 보건.....	11
4. 환경보호	15
5.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21
6. 경영시스템.....	23

1. 개요

1.1. 행동규범 목적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에너지원이 대체되는 ‘전기화(Electrification)’로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탈탄소화로 신재생에너지 송배전 설비 제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솔루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기회 속에서 HD현대일렉트릭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종합 에너지솔루션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및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HD현대일렉트릭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협력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협력회사의 준법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과 전 협력회사는 법률과 본 규범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HD현대일렉트릭과 협력회사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행동규범 기준

본 규범은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RBA) 행동규범, UN 세계인권선언 및 UN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 등 글로벌 기준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규범과 법률 간에 기준이 다른 경우, 준수는 가장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1.3. 행동규범 대상

본 규범은 HD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하여 HD현대일렉트릭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HD현대일렉트릭 제품에 사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회사, 파트너사, 합작사(이하 “협력회사”) 등 거래 및 협력관계에 있는 파트너 모두가 함께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입니다.

규범 적용 대상인 협력회사는 자회사, 계열사 및 협력회사의 협력사(이하 “2~3차 협력회사”)에도 본 규범에서 명시하는 인권 및 노동, 안전 및 보건, 환경보호,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경영시스템 기준과 책임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 및 요청해야 합니다.

1.4. 추가 사항

HD현대일렉트릭 또는 HD현대일렉트릭이 지정한 외부 감사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D현대일렉트릭은 필요시 서면 또는 현장점검/실사를 진행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한 지도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본 규범을 포함한 HD현대일렉트릭의 공급망 관리방안 및 이행 의무사항은 HD현대일렉트릭의 통합구매시스템을 통해 공개

하고 있습니다.

※ 통합구매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s://hipro.hhi.co.kr>

2. 인권 및 노동

HD현대일렉트릭은 UN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의 인권보호 및 노동기준을 지지하며, 인권 노동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인권노동 방침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보호 및 대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학생근로자, 계약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1. 자발적 취업

강제, 담보(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또는 불공정계약에 묶인 노동, 비자발적 노동이나 착취적 징역 노동,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노동이나 용역을 얻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 강압, 납치 또는 사기로 사람을 이동, 은닉, 고용, 전근시키거나 수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협력회사는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물(기숙사, 숙소 등)의 출입과 시설물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강제노동이 확인된 거래업체로부터 제품과 서비스 공급을 받지 않아야 하며,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근로자의 모국어 등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주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이주근로자가 본국을 출국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채용국가로 입국 후 근로계약서 내용을 불합리하게 교체 또는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회사에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력 알선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모집 수수료 또는 고용 관련 기타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수수료를 근로자가 지불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2.2. 연소 근로자(아동 노동)

아동 노동은 제조의 모든 단계를 포함한 기업 운영 전반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아동'이란 15세 또는 의무 교육을 완료한 연령, 해당 국가의 최소 취업 연령 중에서 가장 높은 연령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연령인 사람)

협력회사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근로자 및 취업 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협력회사는 아동 근로자 고용을 즉시 중지하고, 채용 단계의 근로자 연령 검증 절차를 점검 및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거래업체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비롯하여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학생인 근로자가 근로 기간 동안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규범에 따라 학생의 권리 보호 및 학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지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 근로자를 파견한 학교가 합법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고용된 학생 근로자의 교육 파트너를 법령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실사 및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실습 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이때 프로그램은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법이 없는 경우 학생 근로자, 인턴 및 견습생에 대한 급여 수준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신입 사원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3. 근로 시간

기업 관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피로는 생산성 저하, 이직률 증가, 부상 및 질병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현지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1주마다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근무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초과 근무는 모두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2.4.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해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법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시급보다 높아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취업규칙을 항상 게시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적시에 제공하여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쾌적하고 능률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에게는 법령이 요구하는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현지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 공간 변경, 직무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현지 국가별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사회보험에 따른 공제나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하여 정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장 내 항상 게시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상 지시를 자제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 시 사전 고지 및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6. 차별 금지 · 괴롭힘 금지

협력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유무, 임신 여부, 종교, 정치적 소속, 노조 가입 여부, 은퇴군인 연금자격, 유전정보 관련 기밀, 혼인 여부

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단기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정규직 근로자 대비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장소 변경, 전환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 근로자에게도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합리적인 처벌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지법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근로환경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의료적 검진 행위(임신 여부 등)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2.7. 결사의 자유

현지법에 따라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본인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와 단체교섭권,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의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생각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사 간 결정사항을 이행 및 관리(이행 결과에 대한 문서나 사진 보관)해야 합니다.

2.8.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협력회사는 자원 채굴,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운영의 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자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환경적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영향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소음 발생, 일조권 침해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2.9. 고객 인권 보호

협력회사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과정은 물론, 사용 단계에서의 안전과 효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운영 과정에서 수집하게 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 및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정보보호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10. 취약계층 보호

협력회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내 조치를 마련하고, 사회공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3. 안전 및 보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근로자 투입과 교육이 작업장 내 보건 및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3.1. 산업 안전

기업 운영 시 요구되는 모든 안전·보건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과정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보건 및 안전 위해요소(화학물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낙상 등)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는 적절한 작업 절차 설계를 통해 관리 및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행정적 관리, 예방 정비와 안전작업 장치(잠금·차단 장치), 지속적인 산업 보건 및 안전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해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 및 관련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임신부와 수유부를 고위험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장 내 임신부와 수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 및 완화

해야 합니다.

3.2. 비상사태 대응 방안

협력회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잠재적 비상상황을 사전에 평가 및 파악하고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비상대책과 대응절차 (비상상황 보고, 직원 통지, 대피절차 안내, 근로자 교육·훈련)에 따른 조치와 자체 수립한 비상계획 및 매뉴얼에 따른 정기적인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비상계획에는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탈출로와 유도등, 비상대응 담당자 연락처 정보 및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명피해와 환경·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3. 산업재해 및 질병

업무상 이유로 인한 근로자 부상·질병·장해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또는 질병발생에 대비해 예방, 관리, 추적, 보고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 규정에는 재해 및 질병 보고 장려,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의료처치 제공, 사례조사, 원인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 업무복귀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산업 위생(위험노출통제)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인자에 대한 근로자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위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기계·기구·설비 개선, 안전규정 마련, 위해요소 및 위험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해 위험요인을 통제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이 파악된 경우, 협력회사는 위해요소를 제거 및 저감해야 합니다.

적절한 통제가 어려운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3.5. 육체노동

육체노동의 위해요소에 대한 근로자 노출을 파악하고 교육,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위해요소에는 수작업 및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시간 서서 수행하는 작업, 심하게 반복적이거나 체력 소모가 심한 조립 작업이 포함됩니다.

3.6.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생산 및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 위해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설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정기적으로 설비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하며, 설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로 인해 직원이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와 안전장치 등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방독·방진 마스크 등) 및 작업복을 무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3.7. 위생, 식품 및 주거(식당, 기숙사 등)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시설, 식당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기숙사는 청결과 안전을 유지해야 하며 비상출구, 온수, 조명, 난방 및 환기 장치, 주요 소지품을 보관하기 위한 개별 보관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잠금장치를 갖춘 합리적 크기의 개인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3.8.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 모든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와 교육을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업무 배치 전에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업무 중에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획된 교육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다.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하며, 근로자가 회사 및 상관으로부터 보복 등 근로조건상 불이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건강 및 안전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4. 환경보호

협력회사는 제조공정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제품 및 서비스는 아래의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1. 환경 인허가 및 보고

협력회사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환경 인허가(대기배출시설 등), 승인 및 등록을 취득하고 현행 상태로 유지·운영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운영 및 보고 요건 상태를 유지, 운영해야 합니다.

4.2.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협력회사는 가스 배출, 오염물질 방출, 폐기물 생성을 원천 차단하거나 오염통제 장비 추가, 생산·유지 공정 및 시설의 변경, 그 밖에 기타 방법을 통해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물, 화석연료, 광물, 원시림 산물 등의 천연자원은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유지관리 시설 및 프로세스 최적화, 대체 재료 활용, 자원의 재사용·보존·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을 활용한 관행을 적용해야 합니다.

4.3. 유해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재활용 및 폐기 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 과정에서 특정 물질의 이용 금지 및 제한과 관련된 모든 법규와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 및 기타 물질의 취급,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폐기 시 유해물질 파악 및 식별 라벨을 표기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4.4. 폐기물 관리

협력회사는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 저장, 폐기 및 재활용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5. 대기 배출 관리

협력회사는 기업 운영 과정(제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 물질,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정기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4.6. 물 관리

협력회사는 수원과 물의 사용 및 방출을 기록하고, 특성을 파악 및 감시하며, 물 보존 방법을 모색하고, 오염경로를 통제하는 등 물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 및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폐수는 방출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그 특성을 파악 및 감시하여 통제 및 처리해야 합니다.

4.7.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는 전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및 Scope2)을 보고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4.8. 환경경영체계 구축

협력회사는 환경보호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환경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4.9. 녹색구매

협력회사는 천연자원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물품’ 구매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녹색구매’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녹색구매’란 천연자원의 보전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친환경 물품 구매를 확대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구매 행위를 의미하며, ‘친환경 물품’이란 대외적으로 녹색구매품목으로 인정되거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환경 관련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4.9.1. 주요 친환경 인증

구 분	마 크	내 용
친환경 인증		제조·소비·폐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의 배출이 적고, 자원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제품에 부여

탄소 발자국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저탄소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부여
GR인증 (Good Recycled)		국내에서 생산된 재활용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환경 친 화성이 높은 제품)
녹색 인증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그린 IT, 친환경 농식품 등 친환경 녹색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사업체, 전문 기업에 부여
에너지 절약 인증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 부여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에 따른 절전 기준을 만 족하는 제품)
고효율 기자재 인증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설비 및 기기

4.9.2. 녹색구매 방침

HD현대일렉트릭 구매 담당자는 제품 구매 업무를 수행할 때 아래의 방침을 준수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 ① 친환경 물품의 발굴 및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물품 구입시 친환경 물품으로 대체하여 구매가 가능한 경우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검토한다.
- ③ 구매하는 친환경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협력회사를 발굴하기 위

한 노력을 지속한다.

- ④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구매 개선 활동을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 ⑤ 녹색구매 적용을 위하여 협력회사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4.9.3. 업무 정의 및 절차

녹색구매 활동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속을 위해 HD현대일렉트릭 구매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수행시기	내 용	비 고
기준 관리	상시	- 친환경 물품의 기준 설정 및 조정	(구매 기획과)
상품 개발	상시	- 대내/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녹색구매 대상 상품 확인 및 개발 - 대상 품목의 확정 및 관리 - 유관부서에 친환경 제품 사용 독려	(구매 기획과, 구매 담당자)
구매 검토	매 입찰시	- 설계부 및 개발부로부터 구매요청 접수 시, 사양을 만족하는 친환경 제품이 있는 지 점검 - 입찰시 친환경 제품 우선 구매 검토	(구매 담당자)
실적 관리	연 1회	- 친환경 제품 구매실적 현황 확인 및 관리	(구매 기획과)

4.9.4. 협력회사의 책무

협력회사는 아래의 방침을 준수하여 녹색구매를 수행해야 합니다.

- ① 친환경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회사는 물품 계약 시 환경관련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 등 공급하는 제품이 친환경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② 물품 계약 후 해당 물품의 주요 환경정보 변경 시 HD현대일렉트릭에 고지해야 한다.
- ③ 공급물품 제조 시의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④ 그 밖에 HD현대일렉트릭이 요구하는 녹색구매 제반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5.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은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1. 반부패 및 부당이익 금지

협력회사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 및 반부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관리 프로세스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사업권을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5.2. 정보 공개

협력회사는 모든 업무거래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노동, 안전보건, 환경관리, 사업활동 및 구조, 재무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 및 업계 기준, 관행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망 내 관련 분야의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의 위조나 허위 진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3. 지식(물적)재산권

HD현대일렉트릭과 협력회사는 상호간에 지식(물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며, 제3자의 지식(물적)재산권 등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5.4. 공정거래 및 경쟁

협력회사는 공정거래와 경쟁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5.5.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회사는 내·외부고발자의 익명성 및 신원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보복 등 근로조건상 불이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5.6. 책임 있는 원자재(분쟁광물 등) 조달

협력회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원자재(텅스텐, 주석, 금, 탄탈륨 및 코발트 등 분쟁광물) 및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의 지침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실사 프레임워크에 따라 원자재가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인권침해, 부정부패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7. 개인정보보호

협력회사는 공급업체, 고객, 소비자 및 임직원을 비롯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HD현대일렉트릭의 고객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사생활 보호 및 정보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5.8. 수출입 관리 및 통관

협력회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 및 관세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전쟁 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의 수출입 제한 규제를 준수하며, 위 법 위반 및 경제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협력회사는 필요 시 HD현대일렉트릭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협력회사는 본 규범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운영 및 제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준수, 해당 규범과 관련한 운영 위험을 파악 및 완화할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을 설

계 및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여야 합니다..

6.1. 기업의 준수 의지

협력회사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의 사회 및 환경 책임 정책 성명서를 현지어로 작성해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영진 신년 사, 내부지침,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해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6.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협력회사는 경영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고위 경영진은 경영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법령 또는 규정 및 고객의 변화,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리스크 등)에 대한 정기적인 이사회 보고 절차를 마련해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6.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협력회사는 본 규범의 요건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6.4. 위험 평가 및 관리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준법, 환경, 안전, 보건, 노동 관행 및 윤리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각 위험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며,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적·물리적 통제수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6.5 개선 목표

협력회사의 사회·환경 및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대상, 실행 계획을 밝힌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전 사업영역에서 뇌물수수, 부패, 강탈 및 횡령에 대해 청렴성을 유지하고, 인권존중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인권경영위원회, 영향평가, 처벌, 개선 및 이행절차 모니터링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6.6. 교육

협력회사의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6.7. 커뮤니케이션

협력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에 관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근로자와 공급업체,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정기적인 소통 절차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본 규범에 대한 준수사항을 점검 및 기록하고 해당 점검결과의 주요사항(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에 따른 원가, 매출, 경영전략, 영업관련 정보 제외)을 공개해야 합니다.

6.8. 근로자 피드백, 참여 및 고충 처리

협력회사는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 및 효과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본 규범에서 다루는 관행 및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나 위반 사항을 접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지향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인권침해 사례가 제보될 경우, 내용 확인과 조사 절차를 거쳐 구제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모든 제보내용과 제보자의 정보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 등의 보복행위는 금지됩니다.

근로자들은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6.9. 자체평가

협력회사는 법률 및 규제 요건, 본 규범의 내용, 환경 및 사회 책임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 고객 요구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6.10. 시정 조치 절차

내·외부 평가 및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불일치 사항을 적시에 시정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6.11. 문서화 및 기록

규제 준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 회사의 요구 사항을 지키기 위한 문서 및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합니다.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해야 하며, HD현대일렉트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에 따른 원가, 매출, 경영전략, 영업관련 정보 제외)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6.12. 공급업체 관리

협력회사는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협력회사의 공급업체에 전달하고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서 요구하지 않는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하여서는 안됩니다.

6.13. 기타 사항

HD현대일렉트릭은 본 규범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규범 실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협력회사 행동규범은 정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사항은 HD현대일렉트릭 홈페이지 [ESG 경영] 메뉴 또는 하이프로 시스템(<https://hipro.hhi.co.kr/>)을 통해 공지합니다.

HD현대일렉트릭의 모든 협력회사는 기업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 규범이 명시하는 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반영해야 하며 HD현대일렉트릭과의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조치 및 노력을 수행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명”는(은) HD현대일렉트릭 협력회사로서 본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협력회사명”가(이) 본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위반한 경우 이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서 HD현대일렉트릭이 계약의 해지, 거래관계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